

법무부령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연 월 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 이유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 선정 지원할 수 있도록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결정 시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근거 추가(안 제1조의2, 제1조의3, 제8조 제2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해자 및 범죄행위자 정의 규정에 특정강력범죄법상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행위자를 각각 추가하여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부패 방지(안 제7조의4)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에게는 법 준수 등 공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요구되므로 금품 수수 등 부정행위 발각시 필요적으로 해촉하도록 하여 부패 방지를 위해 규정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국선변호사 선정 담당 검사 지정 근거 수정(안 제8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학대 또는 성폭력 전담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던 것을 아동학대, 성폭력, 강력 전담검사 등을 국선

변호사 선정을 위한 전담검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실시에 대비하고 실무를 반영한 전담검사 지정 권한을 도입함

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요청 기관 추가(안 제11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지원 대상자가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협조기관에 추가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함

마. 기소중지·참고인중지 결정 시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의 기준 추가(안 제13조)

검사의 기소중지·참고인중지 결정 시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 없이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이 무기한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에 따른 피해자와 국선변호사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

바. 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 관리 강화(안 제5조, 제24조)

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 국선변호사의 비위행위 발생 시 법무부가 검사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국선변호사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한 것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사유에 준하는 사유 발생 시 검사장이 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비위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하고 국선변호사 명부에서 삭제 및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관리를 강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제1조의2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의 행위자

제1조의3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5항 제5조제1항 중 “추가하면”을 “추가 및 삭제하면”으로 한다.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소속 성폭력, 아동학대 또는 강력 전담 검사 등을 국선변호사 선정을 위한 전담검사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5항 단서에 해

당하는 경우

제11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8.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제13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검사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결정이 있는 경우 : 사건이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결정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사건이 재기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8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한다.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형사조정, 전문가의 감정 등을 위한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시에는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선변호사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1. 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국선변호사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국선변호사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 바. (생 략) <신 설>	제1조의2(정의) ----- -----. 1. ----- -----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2. “범죄행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 바. (생 략) <신 설>	2. ----- -----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의 행위자
제1조의3(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국선 변호사(이하 “국선변호사”라 한 다)의 선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 다. 1. ~ 3. (생 략)	제1조의3(적용 범위) ----- ----- ----- -----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 ①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명부를 작성하거나 추가하면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예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7조의4(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 5. (생략)

제8조(국선변호사 선정) ①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

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5항

제5조(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 ① -----

---- 추가 및 삭제하면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4(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

--.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제8조(국선변호사 선정) ① ----

--. 이 경우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소속 성폭력, 아동학대 또는 강력 전담검사 등을 국선변

또는 아동학대 전담검사가 한다.

② 검사는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③ (생략)

제11조(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으로부터 형사절차 등에 참여하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호사 선정을 위한 전담검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 -----

-----.

1. ~ 5. (현행과 같음)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

-----.

1. ~ 6. (현행과 같음)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신 설>

<신 설>

제13조(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

①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은 제16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가 중첩되거나 연속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가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1. ~ 6. (생략)

<신 설>

다른 성매매피해상담소

8.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

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9.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

제13조(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

① -----

--. -----

-----.

1. ~ 6. (현행과 같음)

7. 검사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결정이 있는 경우 : 사건이 기
소중지, 참고인중지 결정된 날
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사건이 재기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8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
정한다.

<신 설>

② (생 략)

제24조(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 등) ①·② (생 략)

<신 설>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형사조정, 전문가의 감정 등을 위한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시에는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선변호사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1. 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국선변호사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국선변호사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우	
--	--	---	--